

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서류작성 참고사항

항목		상세항목	세부내용
자기자금	금융기관 예금액	예금(적금) 등	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보유 중인 자금
	주식·채권 매각대금	주식(채권)매도액	주식·유가증권 등 매각으로 조달하는 자금
		이에 준하는 자금	이에 준하는 자금
	증여·상속 등	가족 등 증여·상속	가족 등으로부터 증여·상속받아 조달하는 자금
	현금 등 기타	보유 중인 현금	금융기관 등에 예치하지 아니하고 보유 중이던 현금
		펀드/보험 금융상품 해지 등	예금(적금)이 아닌 금융상품 투자자금을 회수하여 조달하는 자금
		이에 준하는 자금	타인에게 대여한 자금 등을 회수하여 조달하는 자금 등
	부동산 처분대금 등	타 부동산 매도액	타 부동산을 매도하여 조달하는 자금
		기존 보증(전세)금	기존 보증(전세)금을 회수하여 조달하는 자금
		중전부동산 권리가액	재건축 등으로 발생한 중전 부동산 권리가액 등
이에 준하는 자금		부동산등의 매각(기존 임대차 보증금 회수) 등을 통하여 조달하는 자금	
차입금 등	금융기관 대출액	주택담보대출	금회 취득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실행(승계) 자금
		신용대출	위의 주택담보대출 이외 마이너스 통장 등 신용대출 자금
		그 밖의 대출	타부동산 담보대출 등 그 밖의 금융기관 대출액 및 종류 기재
		금융기관 대출액 중 주택담보대출액을 기재한 경우	금회 취득하는 주택은 제외하고 그 외 주택을 보유 여부에 √ 체크, 보유란에 √ 체크한 경우 보유 중인 주택의 수를 기재 (분양권, 입주권 등 권리상태의 주택을 포함하여, 부부공동명의 등 지분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각 건별로 산정하여 기재)
	임대보증금	현 임차인 전세(보증)금 승계	현 임차인 전세금을 매도인으로부터 승계하는 금액
		신규 임대차 계약	금회 취득하려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통해 조달하는 자금
	회사지원금·사채	법인/개인사업자 등 제3자에게 대여하는 자금	대부업법에 따라 등록된 대부업체 및 소속된 회사 등의 주택자금 대여금 등 (상환기간 등이 약정된 자금)
	그 밖의 차입금	제3자 등 그 밖의 방법으로 대여하는 자금	가족/친인척 등으로부터 대여하여 조달하는 자금(상환기간 약정이 없거나 불분명한 대여금)
입주계획	본인입주	본인이 입주할 예정인 경우	주민등록상 가족과 함께 입주하는 경우
	본인 외 가족입주	본인 외 가족 입주 예정인 경우	주민등록세대가 분리된 가족이 입주하는 경우(ex. 분가한 자녀가족, 본인의 부모만 입주 등)
	임대(전월세)	입주하지 않고 임대할 계획인 경우	제3자 등에게 임대할 경우
	그 밖의 경우 (재건축 등)	입주 또는 임대 이외	재건축/재개발 등 사업추진을 위하여 시행사 등이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등
자금지급 방식	계좌이체 금액	은행 등 금융기관 이체지급 방식	증빙가능한 금융기관 이체지급 방식으로 지급하는 금액
	보증금·대출금 승계	기존 대출금·임대차 보증금 승계	매도인의 기존 대출금·전세보증금 승계하는 금액
	현금 등 기타지급	현금 등 기타자산 지급	계좌이체 또는 승계한 금액이 아닌 현금 등으로 지급하는 금액 및 그에 대한 지급사유를 기재

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작성 안내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시를 합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시		처리기간		
제출인 (매수인)	성명(법인명)		주민등록번호(법인·외국인등록번호)		
	주소(법인소재지)		(휴대)전화번호		
① 자금 조달 계획	자기 자금	② 금융기관 예금액 본인명의의 예금, 적금 등 원	③ 주식·채권 매각대금 본인명의의 주식, 채권, 이에 준하는 매각으로 조달하는 자금(예정액 포함) 원		
		④ 증여·상속 증여·상속받아 조달하는 자금(예정액 포함) 원	⑤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보유 현금, 보험, 펀드 등 예·적금이 아닌 금융상품, 이에 준하는 자금(예정액 포함) 원		
		⑥ 부동산 처분대금 등 원	⑦ 소계 원		
	① 자금 조달 계획	차입금 등	⑧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 부동산 매도액, 보증(전세)금 등 중도금대출, 주택담보대출, 신용대출 등 대출금액의 합계 원	주택담보대출	신설동역자이르네 중도금대출 실행자금 원
				신용대출	위의 중도금대출외의 마이너스 대출 등 신용대출자금 원
				그 밖의 대출	타 부동산 담보대출 등 그 밖의 금융기관 대출액 및 종류 기재 (대출 종류:) 원
		기존 주택 보유 여부(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만 기재)	[] 미보유 [] 보유 (건)		
		⑨ 임대보증금 입주시점에 해당 주택을 전세로 임대차 계약할 경우 원	⑩ 회사지원금·사채 대부업체 및 소속된 회사 등에서 주택자금이 있는 경우 원		
		⑪ 그 밖의 차입금 [] 부부 [] 직계존비속(관계:) [] 그 밖의 관계() 원	⑫ 소계 차입금 등 총 합계 ⑧~⑪ 항목 합계 원		
	⑬ 합계	⑦ + ⑫ 합계량 일치 분양 금액(원단위까지 동일 해야함) 원			
⑭ 조달자금 지급방식	총 거래금액		총신고액(⑬번 합계액) 원		
	⑮ 계좌이체 금액		총신고액(⑬번 합계액) 원		
	⑯ 보증금·대출 승계 금액		원		
	⑰ 현금 및 그 밖의 지급방식 금액		원		
	지급 사유()		원		
⑱ 입주계획	[] 본인 입주 [] 본인 외 가족입주 (입주 예정 시기: 년 월)		[] 임대 (전·월세)	[] 그 밖의 경우 (재건축 등)	

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1 제2호나목, 같은 표 제3호가목 전단, 같은 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제출합니다.

‘본인 입주’는 주민등록상 가족과 함께 입주하는 경우 / ‘본인 외 가족 입주’는 주민등록 상 세대 분리된 가족이 입주 하는 경우 입주시점에 임대차 계약(전월세)을 통해 자금을 마련할 경우 필히 ‘임대’란에 체크

년 월 일

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제출인

(서명 또는 인)

유의사항

- 제출하신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되어, 신고내역 조사 및 관련 세법에 따른 조사 시 참고자료로 활용됩니다.
-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(첨부서류 제출대상인 경우 첨부서류를 포함합니다)를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 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제2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이 서식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접수 전에는 제출이 불가하오니 별도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여부를 신고서 제출자 또는 신고관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